



리치스태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

부두에서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을 하버크레인(Habour Crane)으로 안벽에 하역하고 리치스태커(reach stacker)로 부두 임시 야적장에 적재하던 중 화물 검사원인 피해자가 컨테이너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리치스태커 유도자 미배치 및 시야확보 미흡
 - 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통제 등을 위한 유도자 미배치 및 전방 시야확보를 하지 못함
- 위험장소에 임의 출입
 - 피해자가 위험장소인 하역작업장소(컨테이너 임시야적장)에 임의 출입

TIP

안전작업

1 리치스태커 유도업무 철저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적재·하역 등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위험작업 시에는 적정위치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

2 위험장소에 임의 출입금지

- 근로자가 하역작업장소 등 위험장소에 임의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



유도자 배치



위험장소 출입금지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(작업지휘자의 지정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(접촉의 방지)





리치스테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

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세요!

